

춘천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가단3771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C

피 고 D(일부구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봉진(소송구조)

변 론 종 결 2024. 5. 22.

판 결 선 고 2024. 7. 3.

## 주 문

- 피고는 E(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06. 11. 8. 접수 제504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09. 1. 13. 접수 제12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216265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을 하여, 2018. 8. 13. ‘E은 원고에게 21,468,157원 및 그 중 5,160,102원에 대하여는 연 29.9%, 위 금원 중 53,000원에 대하여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고 2018. 9. 1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을 ‘신용카드대금채권’이라 한다).

나. E은 2006. 11.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025분의 43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2006. 11. 8. 접수 제5043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009. 1. 13. 이 사건 부동산(E은 2008. 3. 21.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지분 전체를 이전받았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2009. 1. 13. 접수 제124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E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06. 11. 8. 및 2009. 1. 13.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E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E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21. 10. 23. E 내지 F(대표이사 E)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인하며 2027.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2021. 10. 23.부터 새롭게 진행되고 아직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원용하였다면, 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19. 1. 13.경 그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는데, 채무자인 E 내지 F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면서 그 채무를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E의 채권자인 원고가 E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원용하는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유성희

별지